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백철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11월 일
제 출 자 : 백철현 의원 외 6인

1. 개정이유

○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.

○ 또한,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(2014.10.27.)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월정수당을 정하고,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·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, 성주군의회 의원 여비를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.(안 제3조의2 신설)

○ 매월 월정수당 166만 8천원을 171만 8천원으로 정하고자 함.(안 제4조제1항)

○ 성주군의회 의원의 여비 현실화(안 별표 1, 별표 2)

- 성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맞게 조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,
공무원 여비 규정

나. 예산조치: 2018년 당초 예산반영

다. 기 타

1) 2015년~2018년도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
[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-1(2014.10.27.)]

2)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〔2017.11. 9~11.13.(5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성주군의회(이하・・의회・・라 한다)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원”을 “성주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주군소속공무원”을 “성주군 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66만 8천원”을 “171만 8천원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”를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따른다.”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성주군의회(이하・・의회・・라 한다)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----------.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・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	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성주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----------.
②의정활동비는 매월 성주군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	②---------- 성주군 소속공무원----------.
<신 설>	제3조의2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166만 8천원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월의 임기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	제4조(월정수당지급) ①---------- 171만 8천원----------.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준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	제9조(준칙) --------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따른다..

[별표 1]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
의 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20,000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	25,000

비고

1. 성주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성주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2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등급	일비	숙박비	식비	준 비 금		
							15일 미만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1등 정액	실비액	가	35	223	107	140	170	195
			나	35	160	78			
			다	35	130	58			
			라	35	85	49			
의원	2등 정액	실비액	가	30	176	81	130	155	180
			나	30	137	59			
			다	30	106	44			
			라	30	81	37			

비고

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「공무원 여비규정」제16조 관련 「별표 4」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.
2.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《개정전》

〔별표1〕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비고 : 1.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성주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㎞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【별표2】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8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등급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가 나 다 라	1등 정액	실비액	35 35 35 35	166 120 92 79	107 78 58 49	140	170	195
의 원	가 나 다 라	2등 정액	실비액	30 30 30 30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

가. 가등급 :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등급

(1) 아시아주. 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
(2) 남.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킷츠네비츠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
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
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브와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,

다. 다등급

(1) 아시아주. 대양주 : 뉴질랜드, 마샬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
(2) 남. 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코, 파나마

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 포트투갈, 폴란드

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바아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카타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(1) 아시아주. 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

(2) 남. 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
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, 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
(4) 중동. 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세네갈, 소말리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
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.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